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,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여 물품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용어정비(안 제1조, 제21조①, 제22조②, 제27조① 및 동조 ②, 제29조①, 제33조)

- 군을 성주군(이하“군”이라 한다)로 정비
- “소속기관의 장 또는 청·소의 장”을 “소속기관의 장 또는 의회사무과·직속기관·사업소의 장”으로 정비
- “망실·훼손의 사실 조사 보고 시 군수 또는 청·소의 장”을 “물품관리관”으로 정비
- 물품관리사무 검사 시 물품관리관과 청·소의 장에서 청·소의 장을 삭제하고 물품관리관으로 정비

나. 기증품의 취득 규정 개정(안 제11조①)

- 상위법에 따라 기증품의 취득 시 “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”를 “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”로 개정하여 불합리한 부분 개선

다. 타직원에 의한 인계 근거 규정 개정(안 제33조)

- 타직원에 의한 물품출납사무 인계 시 제33조에서 제32조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입법예고: 의견없음 [2019. 8. 27.~2019. 9. 16.(20일간)]
라.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마.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용어의 정비, 기증물품의 취득규정과 타 직원에 의한 인계 근거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고,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